

청 와 대 민 원

제목 : 진실을 밝혀주세요.

민원인 : 임그루

우편번호 36322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

휴대폰 010-2878-2177

내 용

국민권익위원회에 2016년10월19일 접수(1BA-1610-117816)되어 10월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이송된 민원 답변을12월 6일 받았습니다.(첨부1) 이해되지 않아 다시 민원 합니다.

민원 요약

법원행정처 답변 3을 보면 “『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』 제4조 2항에 따라 재판사무국장 명의로 처리“ 했다고 합니다.

○. “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 4조 2항”을 보면(첨부2)
“위임전결사항중 경미사항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및 질의응답과 민원 사무처리”는 ??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.

☞. 이 사건은 경미사항이 아니고 많은 판사님들이 증거묵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.

예.1

○. 합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했는데도 “억울한 건 알겠는데 오래된 사건이고 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”고 합니다.(2010재누62 변론)

○. 판결에 영향을 주는 의사진단서 회사사규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? 문의하니 이유 없이 “인정 안할 만하니 안하는 것”이라고 합니다.(2016재나35 변론)

☞. 이 외의 변론한 내용도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. 즉 범도 양심도 없이 판결 했다고 생각합니다.

예.2

○. 2001재누15 처음 재심 때에는 변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. 2004년 4월30일 변론 때는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님 때의 실세인 문재인님이 재판장님이었습니다.(3명의 판사님 중 가운데 재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 사건을 취급했습니다.). 기각 판결문 2001재누15 에는 다른 이름입니다.(첨부3)

○. 2008년 10월쯤에는 제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실에 “거짓 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!”를 주며 이 내용입니다. 하고 민원도 했습니다.

☞.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.

도움을 얻으려면 국민에게 알려야한다는 마음에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때 2002년 5월경 책으로 편집해 전국의 언론사 및 대학교신문사 및 학생회 등 400여 군데에 제보했습니다. 대법원 2008두7045 때 2008년 6월 경 책으로 편집해 전국의 언론사 및 대학교신문사 및 학생회 등 800여 군데에 제보했습니다.

국민이 다 알면 틀림없이 진실이 밝혀지는데 작은 일부분정도가 알려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, 최선을 다했지만,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정치인들은 말합니다. 국민을 위한다고요. 개개인이 모여 국민입니다. 개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그것이 사회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.

☞. 두 번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3번째 민원입니다. 정부에서 직접 간섭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진실이 밝혀져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 됐으면 하는 맘입니다.

- 첨부: 1. 법원행정처'재판사무국장'답변서. 2장
2.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. 2장
3. 2001재누15 판결문. 5장

- 참고사항: 4. 첫 번째 민 원한 내용. 3장
5. 두 번째 민 원한 내용. 2장
6.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! 1권(2002, 2008년 전국의 언론사 대학신문사 등에 제보한내용)

2016년 12월 일 임그루

박근혜대통령 귀하